

의안번호	제2638호
의 결	2023.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발 의 자	김향숙 의원
발의연월일	2023. 6. 28.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향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38
----------	------

발의연월일 : 2023. 6. 28.

발의자 : 김향숙 의원

1. 제안이유

고성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고,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라.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마. 야외운동기구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3-24호

- 예고기간: 2023. 6. 28.(수) ~ 2023. 7. 3.(월) [5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선용,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담당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내 표시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 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 표시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안내 표시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부착해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안내 표시문(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구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락처	

야외운동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 운동기구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이를 준수합니다.
- 어린이, 환자나 허약자 등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지키고, 표시된 운동방법을 꼼꼼히 읽고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합니다.
- 사용 전 운동기구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기구의 파손, 고장, 흔들림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 운동기구 설치 장소에 위험요소를 확인 후 이용합니다.
- 낭떠러지 인근 또는 비탈길에 설치된 운동기구 이용 시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신체능력보다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공중 걷기 이용 시 두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피합니다.
- 다리 보폭을 너무 크게 하면 인대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고혈압, 안구장애 및 빈혈이 있거나 다리 힘이 약한 사용자는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 사용을 피합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고성군)

작성자:	관리번호	00읍·면-00리-00마을-부여번호		
위 치		총괄부서		
유 형	ex)경로당	설치부서		
설치기구	총 () 종 / ()점	관리부서		
설치일자		설치면적		
관 리 실 태				
기 구 명	상 태			
	양호	보통	불량	기타사항
ex)허리돌리기		√		
현장사진(전체적인 조망 사진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현장사진(운동기구 1점의 사진 첨부)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비 고
	소 속	직 급	성 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군·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